

의안번호	2216570
의 퇴 인	박선원의원
회 답 일	2026.7.3.
추계번호	26D053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 3 (기부 대 양여사업의 오염정화 등) 신설	국방부장관은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하여 양여하기로 한 재산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국가의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함(제2항)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실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합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양여가격에서 그 비용을 뺄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2조의 3 (기부 대 양여사업의 오염정화 등)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하여, 양여재산에 따른 국가의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 그 위험물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위험물이나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위험물 및 토양오염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규모, 위험물의 종류 및 규모, 토지의 오염 정도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기부대양여의 사업 방식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기부대양여 사업은 군 입장에서는 이전이 필요하지 않으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군부지를 양여받기 위해 부대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여 사업이 시작되므로, 이전할 부대와 양여하는 부지 규모를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음
 - 또한, 양여부지의 토양오염 규모 또한 전문기관의 정밀조사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 토양오염정화비용의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

<참고>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업명	재산가액(억 원)		주요 사업내용
		기부	양여	
추진 완료	50사단 군인아파트 이전	99.5	91.0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추진 중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이전	7.7	7.7	강변로 도로확·포장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23경비여단 철벽사격장 이전	460.0	383.5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美 캠프워커 일부시설 및 47보급소 이전	188.1	188.1	공원 조성 및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사창리비행장 이전	166.6	166.6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	5,868.9	5,864.0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53사단 127여단 본부(3대대통합) 이전	1,220.2	1,220.1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2공병여단 120공병대대 일부시설 이전	3.7	3.0	도로 선형개량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23경비여단 4대대 이전	496.4	269.8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50사단 123여단 사격장 이전	52.1	52.1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37사단 신병교육대 사격장 이전	223.5	198.9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35사단 105여단 동호TOD 이전	16.8	5.0	해양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5포병여단 레이더진지 이전	82.0	81.9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311통신대대 일부시설 이전	20.0	19.9	도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50탄약대대 이전	12,177.9	12,100.6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자료: 국방부